【 33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4 .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관광객이 장흥관광지내 밤나무숲 공원 및 취사장 주변, 하천변에서 천막을 설치 사용함으로 각종 쓰레기 발생 등 관리비용이 증가되므로, 개인용천막설치 사용료를 추가징수하며, 경형차 주차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련법「관광진흥법」조문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안 제1조, 제3조)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중 「별표2」의 주차료중 경형차를 추가 하고「별표4」의 개인용천막사용료(소형 1일 5,000원, 중형 7,000원, 대형 10,000원)를 신설 징수 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참조

「관광진흥법」 제50조 ,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주차장법」제14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2006년 2월 7일 - 2월 28까지 "의견없음"

□ **기타참고사항**

○ 현행조례 (전문)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장흥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를 "양주시 장흥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관광진흥법 제35조"를 "「관광진흥법」제64조"로 한다.

제2조중 제7호 및 8호를 삭제 한다.

제3조중 "관광진흥법 제23조"를 "「관광진흥법」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입장권과 교부 판매함으로써"를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2의 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차권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하고, 별표3의 요금은 사용면적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며, 별표4의 요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

제6조제5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별표4,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td><td>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td></tr>
<tr><td>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 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td><td>제1조(목적)---------- 「관광진흥법」 제64----------</td></tr>
<tr><td>제2조(정의) 7. "소형차" 라 함은 승용차 및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2톤미만 화물차를 말한다.
8. "중·대형차" 라 함은 13인승이상 승합차 및 적재량 2톤이상 화물차를 말한다.</td><td>제2조(정의) 7호,8호 삭제</td></tr>
<tr><td>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관광지내로 한다.</td><td>제3조(징수구역) ---------- 「관광진흥법」 제50조----------</td></tr>
<tr><td>제4조(입장료납부 등) ①입장료는 별표1의 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장권과 교부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td><td>제4조(입장료납부등)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td></tr>
<tr><td>제5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2의 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차권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하고, 별표3의 요금은 사용면적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여 징수 한다.</td><td>제5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2의 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차권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하고, 별표3의 요금은 사용면적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표4의 요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 한다.</td></tr>
<tr><td>(별표2)
주 차 료(제5조관련)
(단위 : 원)
<table>
<tr><th>구분
차종별</th><th>금 액
당일 1회에 유효함</th><th>비 고</th></tr>
<tr><td>소 형 차</td><td>2,000</td><td>승용차 및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2톤미만 화물차</td></tr>
<tr><td>중·대형차</td><td>3,000</td><td>13인승이상 승합차, 적재량 2톤이상 화물차</td></tr>
</table>
비고 : 다만, 1시간이내의 주차시에는 소형차 1,000원, 중·대형차 2,0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td><td>(별표2)
주 차 료(제5조관련)
(단위 : 원)
<table>
<tr><th>구분
차종별</th><th>금 액
당일 1회에 유효함</th><th>비 고</th></tr>
<tr><td>경형차</td><td>1,000</td><td></td></tr>
<tr><td>소형차</td><td>2,000</td><td>삭제</td></tr>
<tr><td>중·대형차</td><td>3,000</td><td>삭제</td></tr>
</table>
1. 다만, 1시간이내의 주차시에는 경차500원, 소형차1,000원, 중·대형차 2,0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차종별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다.</td></tr>
</table>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신설〉

</td><td>

(별표4)

야 영 료(제5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개인용천막	소형 5,000원	5인이하
	중형 7,000원	5~10인이하
	대형 10,000원	10인이상

</td></tr>
<tr><td>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td><td>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어느 하나에----------

</td></tr>
<tr><td>

[별지 제2호서식]

주차료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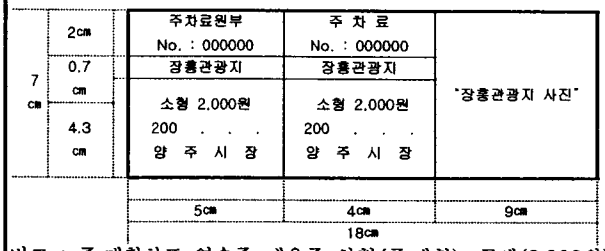

비고 : 중·대형차도 영수중 내용중 차형(중·대형), 금액(3,000원) 이외 동일

</td><td>

[별지 제2호서식]

주차료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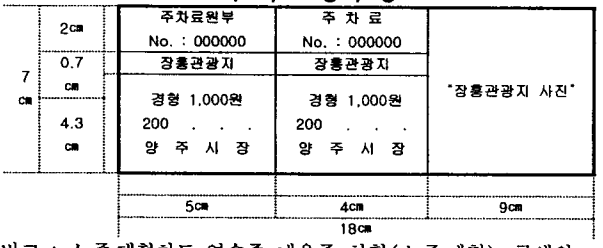

비고 : 소·중·대형차도 영수중 내용중 차형(소·중·대형), 금액외 동일

</td></tr>
<tr><td>

〈신설〉

</td><td>

(별지 제3호서식) 붙임참조

</td></tr>
<tr><td>

〈신설〉

</td><td>

(별지 제4호서식) 붙임참조

</td></tr>
</table>

(별지제3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		호	년 월	일반회계
사용료수입	천막설치료			
계				

Yangju

단, 업소용천막설치 사용료임.

상기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 농협,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주 소

양 주 시 장

(수납기관 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	년 월	일반회계
사용료수입	천막설치료			
계				

Yangju

단,업소용천막설치 사용료임.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함.

납부자성명

주 소

(문화시설사업소 통보용)

영 수 증 서

제		호	년 월	일반회계
사용료수입	천막설치료			
계				

Yangju

단, 업소용천막설치 사용료임.

상기 금액을 영수함.

납부자성명

주 소

(납부자 보관용)

[별지 제4호서식]

야영료 영수증

(앞면)

7 cm	2cm	야영료원부 No. : 000000	야영료 No. : 000000	"장흥관광지 사진"
	0.7 cm	장흥관광지	장흥관광지	
	4.3 cm	소형 5,000원 200 . . . 양 주 시 장	소형 5,000원 200 . . . 양 주 시 장	
		5cm	4cm	9cm
		18cm		

비 고 : 천막영수증 내용중 (중·대형 천막) : 금액 이외 동일

(뒷면)

	※주의사항※ 1. 야영권은 당일 1회 설치에 한하며 익일 09시까지 유효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면제시에는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3.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와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일반,음식물)에 넣어 지정된 장소로 운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의 지정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4.10.1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동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16>

③관광지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제64조 (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10.16>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免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 주차장을 관리 하는자 (이하 "노외 주차장 관리자" 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9.2.8, 2003.7.29)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음영부분 시행일 2008. 1. 1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500cc 미만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